사업주 원격훈련 자부담 예시 안내

< 2019.1.25. >

□ 사업주 지원규정(2019.1.22.) 제16조제5항

제16조(훈련비 지원금의 예외) 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Ⓐ에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Ⓑ을 **제외한 금액은**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Ⓒ을 **초과할 수 없다.**

※ Ⓐ - Ⓑ ≦ Ⓒ

□ 적용 예시

※ 인터넷원격훈련 / B등급(3,800원) / 8시간 / 우선지원대상기업 / 조정계수 0.7 조건으로 예시 적용

구분	Ⓐ 지원금 기준금액		Ⓑ 훈련비 정부지원금		Ⓒ 사업주 자부담금
(예시1) 직무 과정	30,400원 = 3,800원×8시간	-	19,150원 = 30,400원×0.9(우선지원) ×0.7(조정계수) ※ 상한제 적용 시 30,400원×0.9(우선지원) ×0.7(조정계수)×0.15(상한제) = 2,870원	≦	11,250원 이상 = 30,400원-19,150원 ※ 상한제 적용 시 상한액 초과 전 자부담(11,250원 이상)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
(예시2) 직무 법정 과정	30,400원 = 3,800원×8시간		15,200원 = 30,400원×0.5(직무법정) ※ 상한제 적용 시 30,400원×0.5(직무법정) ×0.15(상한제)= 2,280원		15,200원 이상 = 30,400원-15,200원 ※ 상한제 적용 시 상한액 초과 전 자부담(15,200원 이상)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